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 도 자 료**	보다나은 정부

2019년 1월 16일(수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.16(수) 오전 6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9. 1. 15(화)	담당부서	디지털경제통상과
담당과장	이종석 과장(044-203-5630)	담 당 자	김규현 사무관(044-203-5632)

산업부, 「WTO 전자상거래 협상을 위한 공청회」 개최
- 디지털 통상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의 장으로 활용 -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**『세계무역기구(WTO) 전자상거래 협상을 위한 공청회 겸 디지털 통상 정책 토론회』**를 1.16.(수) 삼성동 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.

* **(일시)** 2019. 1. 16(수) 10:00~12:00 / **(장소)** 서울 무역협회 대회의실(트레이드타워 51층)

○ 이번 공청회는 '19년 상반기 시작할 예정인 세계무역기구(WTO) 차원의 전자상거래 규범 마련을 위한 협상에 앞서 **「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」 제7조**에 따라 **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 청취**를 위한 것이다.

○ 동 공청회 계기에 산업부는 전반적인 디지털 통상정책에 대한 입장 정립을 위해 수립한 **『디지털 통상 정책 추진방향(안)』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토론회**도 실시했다.

□ **4차 산업혁명**에 따른 **디지털 기술의 발달**로 **전 산업에 걸쳐 전자상거래가 광범위하게 활용**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, 인공지능·빅데이터 등 **신기술의 발전으로** 글로벌 가치사슬(GVC)의 혁신, 자율차·디지털 헬스케어 등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가 창출되고 있다.

○ 그러나, 이러한 산업과 무역의 변화들을 다룰 국제적 통상규범의 정립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.

□ 세계무역기구(WTO) 차원에서도 '98년 「전자상거래 작업계획」 채택 이래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나, 성과 없이 약 20년간 공전해 오던 상황이었다.

○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'17년 개최된 제11차 세계무역기구 통상장관회의에서 세계무역기구 차원의 전자상거래 통상규범 정립 논의 활성화에 공감대가 형성되었고,

○ 이에 따라 '18년 약 120여개 회원국의 참여하에 개최된 9차례의 비공식 회의에서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다양한 디지털 통상 관련 이슈가 논의되었으며, 동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'19년 상반기 중 세계무역기구 차원의 통상규범 정립을 위한 협상이 시작할 예정이다.

□ 산업부 노건기 통상정책국장은 "그간 산업부는 디지털 통상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작년 4월 전담조직(디지털경제통상과)을 신설하고 업계 등 **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면담**, **기업대상 설문조사**, **정책 연구** 등을 통해 **디지털 통상 정책방향**을 착실히 준비해 왔다."라고 밝히며,

○ "세계무역기구(WTO) 협상이 디지털 통상 이슈 전반에 대해 다룰 예정이기에 그간 준비한 디지털 통상 주요 정책연구 결과와 이를 기반으로 마련된 정책방향을 토론하는 계기로 삼게 되었다."라고 말했다.

□ 이에 따라, 공청회는 △**디지털 통상규범 기업 설문조사 결과** 발표, △세계무역기구 전자상거래 협상 방향을 포함한 **디지털 통상 정책 추진방향** 발표, △세계무역기구 전자상거래 협상의 **경제적 효과** 발표에 이어, △**종합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**했다.

① 우선, 관련 분야 1,0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**설문조사 결과**(한국 리서치), **해외진출에 가장 큰 애로 사항**은 ❶해당 국가 내 현지 플랫폼/컴퓨팅 설비의 사용 또는 설치 요구, ❷해당 국가 동종 업체와의 차별 대우, ❸데이터의 국경간 이동 제한 등으로 나타났다.

② 산업부가 직접 발표한 **『디지털 통상 정책 추진방향(안)』은 디지털 통상 정책의 목표를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** 및 **중소·중견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(GVC) 참여 기회 확대로 정하고,**

❶ 우리 기업에게 필요한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과 선제적 대응
❷ 공정한 디지털 경제 질서 마련에 필요한 3대 이니셔티브 제시
❸ 다자·양자 통상협력을 통한 우리 기업의 시장확대 지원,
❹ 디지털 통상 기반 강화 등의 4대 정책방향을 제시.

* 상세 내용은 붙임 <참고2 : 디지털 통상 정책 추진방향(안) 요약> 참조

③ **디지털 통상규범의 도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**(서울대 김수욱 교수팀)는 협상 수준과 참여국 범위에 따라 약 0.260~0.316%의 국내 총생산(GDP)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④ 마지막 종합토론에서는 학계, 연구기관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 등이 패널*로 참석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세계무역기구(WTO) 전자상거래 협상 방향과 정부의 디지털 통상 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했다.

* 중앙대학교 이한영 교수(좌장), 무역협회 곽동철 연구원, 온라인쇼핑협회 김윤태 상근부회장, KTNET 김채미 R&D센터장, 인천대학교 안영효 교수, KIEP 이규엽 부연구위원

□ 산업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되는 의견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계무역기구(WTO) 전자상거래 협상 추진 관련 후속 국내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.

* 참고1 : 공청회 개요
* 참고2 : 디지털 통상 정책 추진방향(안) 요약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경제통상과 김규현 사무관(☎ 044-203-563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**WTO 전자상거래 협상 공청회 개요**

□ 일시 및 장소 : 1.16일(수) 10:00-12:00, 무역협회 대회의실

□ 공고 : 행정절차법에 따라 2주전 관보 게재(18.12.31),
메일로 참석신청 및 의견접수(bk22ng@korea.kr)

* 회의장 규모 초과 신청시, 협·단체 등 대표성 있는 신청자에게 입장권 우선 배분

□ 세부 일정

시간	내용	비고
10:00-10:05	개회사 ('5)	노건기 통상정책국장
10:05-10:15	발표1 - 디지털통상규범 기업 설문조사 결과('10)	김현수 한국리서치 팀장
10:15-10:30	발표2 – 디지털 통상 정책 추진 방향('15)	이종석 디지털경제통상과장
10:30-10:40	발표3 – WTO 전자상거래 규범의 경제적 효과('10)	김수욱 서울대교수
10:40-10:50	Coffee Breake	
10:50-12:00	토론 및 질의응답 ('70)	패널/참석자

□ 패널 토론자

	성 명	소 속 / 직위	주요 분야
1	곽동철	무역협회 연구원	디지털통상 규범
2	김윤태	온라인쇼핑협회 상근부회장	전자상거래
3	김채미	KTNET R&D센터장	전자무역
4	안영효	인천대 무역학부 교수	디지털 공정거래
5	이규엽	KIEP 부연구위원	디지털경제
6	이한영	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	좌장

디지털 통상 정책 추진방향(안) 요약

1 디지털 통상의 개념 및 의의

□ **(개념)** 인터넷과 ICT 등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**국가간 교역활동 전반**

○ **(의의)** **디지털 기술 발전**은 **제품기획-생산-유통-고객관리-소비 전과정**에 걸쳐 **혁신 촉진** → GVC를 매개로 **확산** → **무역에 큰 변화 초래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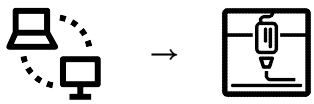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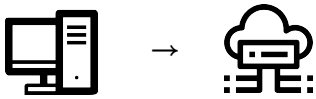
*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22.1조불(B2B 90%, B2C 10%)에 달하며, 우리나라는 1조불로 세계 5위 규모(연평균 성장률 21%)

- 우리 **산업평균 디지털상거래 이용률**은 ('06) 10.6% → ('16) 22.9%로 2배 증가, 금융·보험업 38%, 운수업 33.5%, 제조업 19.6% 등으로 이용 활발

- **무역차원**에서 디지털화는 ① **비용절감**(15%▼, '96~'14) ② **비교우위 변화**(노동·기술·자본→데이터 처리기술) ③ **무역패턴 변화**로 나타남

* 무역 대상이 기존 상품 → 데이터(14→'21년 간 9배 증가 예상)·서비스로 점차 이동

<변화되는 무역패턴 예시>

① 기존에 없던 데이터 교역	② IT 하드웨어→데이터 서비스	③ 디지털 제품→스트리밍 서비스
		
3D 모델링 파일을 전송받아 3D프린터로 출력	컴퓨터 서버 판매 → 클라우드 서비스 판매	필름·CD → 인터넷에서 스트리밍 감상

2 기회와 도전과제

□ **(기회)** 디지털 인프라·서비스 접근비용이 저렴해지면서 **중소·중견기업 및 개도국**들의 **교역 참여기회**가 확대(Easy to scale up)

* '16년 기준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의 절반 이상을 중소기업이 차지(57%)

○ 교육·회계·진료 등 기존 비교역재로 인식되던 **서비스가 디지털화 되어 국경간 공급**이 가능해지면서 **무역을 통한 미래 먹거리 다양화**

* 서비스무역 비중(WTO) : ('16) 21% → ('30) 25%(디지털기술 영향 반영시)

○ AICBM(AI, IoT, Cloud, Big Data, Mobile) 등 신기술을 활용하는 새로운 재화와 서비스 공급 여건을 조성하여 **혁신성장 유도** 가능

□ **(도전) 기존 법령과 통상규범**으로는 새로운 교역 대상·방식과 관련 이슈들*을 다룰 수 없는 가운데, **글로벌 규범**도 없는 공백상태

* (예)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재화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터넷 기업에 대해 현지국 규제권, 과세(구글세), 원산지, 분쟁해결 등 기존 통상 규범은 무력화

○ 특히, 4차 산업 혁명의 핵심인 **데이터의 국경간 이전, 서버 현지화, 플랫폼 기업의 책임** 등의 이슈에 선진국-개도국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

○ 네트워크 효과에 따라 **글로벌 플랫폼**들의 **독점점 지위가 심화**될수록 **소비자 권익침해, 불공정 행위** 등 **통제 불능 우려**

3 주요국들의 대응

□ **(미국: Open Internet)** 첨단기술·서비스 경쟁력을 갖춘 구글·아마존 등 기업들의 전세계 진출을 돕기 위해 **외국 정부의 규제 최소화**에 집중

* 외국의 디지털 무역장벽 해소시 매년 미국 실질GDP 0.3%, 임금 1.4% 상승, 일자리 40만개 증가 효과(미 의회 보고서)

□ **(EU: Digital Single Market)** 협소한 개별시장 한계극복 및 기업 혁신 성장을 위한 **역내 단일시장화 추진, 대외 개방에는 소극적**

* 역내 전자상거래(배송/결제/반품 편의성 및 부가세 간소화), 통신서비스(주파수 조정, 로밍 국내요금화, 망중립 등), 개인정보보호 활용체계 통일(GDPR(정보보호일반법)) 등

□ **(중국: Internet Sovereignty)** **7.7억명 인터넷 인구**(미국의 2배) 대상 **독자적 시장·규제체계(Great Firewall)** 유지, 대외적으로 전자상거래에 제한적 관심

* 자국 인터넷 규제권한 존중 필요 → 사이버 보안 등을 이유로 세계 상위 트래픽 25개 중 8개 사이트를 막고, 자국 기업을 육성

4 국제적인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 현황

□ WTO 체제가 통일된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**미국**을 중심으로 한 **FTA**에서 **새로운 통상규범 도입중**

○ 최근에는 **4차 산업혁명 진전**으로 **CPTPP, USMCA**(NAFTA 개정협정) 중심 **국경간 데이터 이동 자유화** 등의 요소들*이 핵심이슈로 등장

* ① 데이터의 국경간 이전 허용, ② 컴퓨팅 설비 현지화 금지, ③ 소스코드 공개 금지 등

○ **우리나라**는 **기체결 FTA**에서 **전자상거래 원활화를 위한 규범 위주**로 수용했으나, 데이터 이동 자유화에 관한 규범 도입 사례는 미미

* 한·미 FTA에 국경간 데이터 이전 '협력' 조항만 규정, '19년 타결 전망인 RCEP에서는 데이터 이동 자유화 3개 조항 도입을 논의중

5 국내 여건 및 경쟁력 분석

총론 ① **4차 산업혁명**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증가하나, **통상적 관점은 부재**

② **우리 기업의 경쟁력**을 감안한 **디지털 통상규범 검토 부족**

③ 디지털 통상전략 추진을 위한 **연구·네트워크 등 기반도 미흡**

<설문조사 주요결과>

① (전자상거래) 해외기업과 경쟁보다는 상호협력 관계



② (디지털상품) 해애외진출시 불법콘텐츠 유통이 주요애로



③ (데이터 신산업) 국내+해외 데이터규제로 사업화에 어려움

구분	데이터 수집	데이터 보관	목적외 사용	데이터 교환
韓	4	4	3	4
美	2	2	3	2
EU	3	2	3	3
OECD	1	2	2	2

※ 1→4일수록 규제수준이 높음

분야별 크게 **3개 분야**(전자상거래, 디지털 상품, 데이터기반 신산업)로 분석

○ **(전자상거래)** 수출규모는 급격히 증가중이나, **세계적 플랫폼은 부재**

* 전자상거래 수출(B2C) : ('15) 1.26조원 → ('17) 2.95조원(2.3배↑)

- 교역규모는 중국대비 5%로 영세, 수출의 절반 이상이 중소기업(57%)

⇨ 글로벌 플랫폼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**공정거래 여건**이 중요

* 매출액 비교: (알리바바) 4,542억불, (아마존) 1,070억불, (쿠팡) 24억불

○ **(디지털 상품)** 게임·방송 등 **콘텐츠 경쟁력**은 우수, **수출**은 일부(게임) **편중**

* 우리 콘텐츠 수출: ('11) 43억불 → ('15) 57억불 (연평균 7.1% 성장)

- 업계가 뽑은 해외진출시 가장 큰 애로는 '불법콘텐츠 규제 미흡(29%)'

⇨ 한류 소비지(중국, 동남아)에서 **우리 콘텐츠의 실효적 보호방안** 필요

○ **(데이터 기반 신산업)** **제조업·ICT 경쟁력**이 있으나, **핵심 기술력 부족** 및 **엄격한 규제**로 인해 신산업 창출 지연

- 국내 축적된 데이터가 있어도 엄격한 규제로 활용되지 못하는 한계

⇨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**국내 규제 완화·명확화** 필요

6 디지털 통상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

가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에 선제적으로 대응

1. 우리 기업 경쟁력을 감안한 '디지털 통상 협상 방향' 마련

○ **업계 수요와 경쟁력 분석**을 바탕으로 다양한 통상규범 중 **우리에게 중요한 사항을 선별·발굴**하여 **'디지털 통상 협상 방향'**으로 정립

① (협의 전자상거래) ①**전자상거래 원활화 요소는 적극 도입**, ②**글로벌 플랫폼과 공정거래 여건 마련**을 위한 규범 도입 노력

② (디지털 재화) ①전자적 전송물 **무관세 영구화**, ②해외 디지털 콘텐츠 **차별 금지** ③**불법콘텐츠 유통**에 대한 **규제 협력체계** 마련

③ (디지털 신산업) ①**데이터 활용 촉진** ②**기술·규제 표준 선점**을 위한 **국제협력** 및 **디지털 격차해소 사업 추진**

2. 전략적 이익을 도출할 수 있는 디지털 통상 협상 전개

○ **'디지털 통상 협상 방향'**을 바탕으로, **다자·양자협상**에 우리 이익 반영

- 현재 진행중인 RCEP·WTO 협상부터 적용, 향후 체결·개정될 FTA에는 원칙적으로 **Digital Trade 챕터 도입**

나 공정한 디지털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3대 이니셔티브 제시

1. 거대 글로벌 플랫폼(Superstar Firms)과의 공정거래 생태계 조성

○ 국내 기업은 거대 글로벌 플랫폼을 주로 사용하는 협력관계임을 감안, **플랫폼-사용자 간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 조성** 필요

*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 대상 설문조사 결과 46.2%가 해외 플랫폼 활용 관련 이슈를 해외진출시 애로사항으로 지적

⇨ 글로벌 플랫폼의 사용자 비차별 대우, 부당행위 금지 등 **공정거래 생태계 조성**과 **분쟁해결 메커니즘 구축** 등을 위한 규범 도입 추진

2. 글로벌 마이데이터(Mydata) 생태계 구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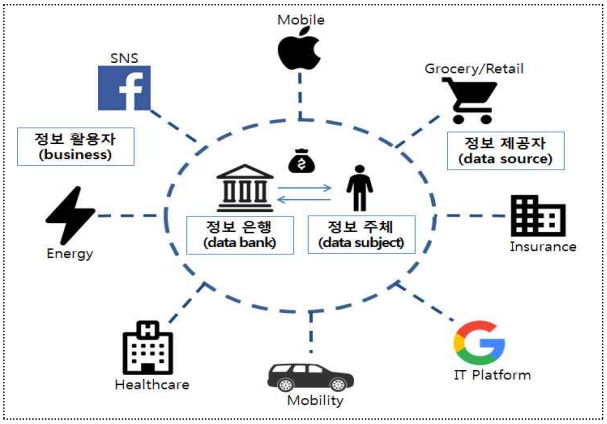
○ 현재 GAFA 등 소수 플랫폼이 **엄청난 데이터를 독점 ⇢ 승자독식 강화**

○ 중소기업·스타트업 등 **누구나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 플랫폼을 구축**해야 4차 산업혁명 시대 **경쟁력 확보** 가능

* 개인정보를 비식별화⇢ 본인동의 없이 활용하는 규제완화는 시민단체 반대로 답보상태

⇨ **개인의 위탁을 받아 개인정보를 관리·활용하는 정보은행**을 중심으로 하는 마이데이터(Mydata) 생태계를 구축

< 마이데이터 생태계 >



① 개인은 정보은행에 개인정보 관리 위탁

② 정보은행은 양질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

③ 기업은 대가를 제공하고 데이터 활용
(정보제공은 원하는 개인만 참여)

④ 정보은행은 이익을 정보제공자에게 배당

- 개인은 **자기정보 통제강화** 및 **데이터 활용시 수익**을 돌려받아 이익, 기업에게 **양질의 데이터를 활용** 가능케 하여 **혁신의 기반마련**

○ **관심 국가들과 시범사업 추진**('19년) 후 성과를 반영하여 운영 거버넌스 및 공통규범을 마련, 글로벌 이니셔티브로 확대('20년~)

3. 디지털 권리침해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

○ 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라 **서버를 해외에 둔 기업**의 **불법콘텐츠 유통, 개인정보 유출 등**에 대응하는 **국제 협력체계**가 필요

- **피해가 발생하는 현지 국가**에 **서버가 없는 한** 구제불가
- **지재권법 사법구제절차는 오랜 시간 소요 → 즉각적 구제 필요성**

< 한국콘텐츠 불법유통 대응 필요성(업계 애로사항) >

· 우리 기업들이 해외 불법 사이트를 발견하여도 차단하기 어려움
- 일부 국가의 경우 소송을 통해서만 불법 사이트의 차단이 가능
- 현지법원이 요구하는 형태의 증거수집이 어렵고 현지기업의 협조가 필요
- 실제 소송을 진행하더라도, 제대로 보상되지 않음

⇨ **즉각적인 권리구제**(컨텐츠 삭제 등)를 위한 협력규정 마련을 위해 **다자차원 공동연구** 추진('19년) 및 협력 메커니즘 시행('20년)

다 다자·양자 통상협력을 통한 우리 기업의 시장확대 지원

1. Digital Alliance 구축 : 디지털 공동시장 창출

○ **기술수준이 유사하거나 협력시 상호보완 효과**를 낼 수 있는 관심국가들과 함께 업계가 참여하는 **비구속적 협력 네트워크** 구축

* 협력대상: ①(1그룹: 호주, 캐나다 등) 중상위 교역규모+디지털 역량이 우리와 유사 ②(2그룹: 아세안) 중상위 교역규모+디지털 부문의 상대적 후발주자

⇨ 참여국간 **전자무역 인프라, 마이데이터** 등 **디지털 협력기반 구축**, 신산업 분야 **기술·규제 조화, 협력사업**을 통해 디지털 시장 확대

2. 전략국가-유망산업 매칭 'Project Connectivity' 추진 : 유망시장 선점

○ **기존 일회성 MOU→**주요 협력국과 **신산업 관심분야 핵심 협력사업** 추진

⇨ 디지털 헬스케어, 스마트 시티 등은 **아직 비교역재 → 협력사업**을 통해 **해당국과 기술·규제 조화**를 이루고, **이를 기반으로 수출 산업으로 육성**

* 협력 어젠다(예시) : ①한-싱가포르: 디지털 헬스케어 ②한-베트남: 스마트 팩토리 ③한-호주: 지능형교통체계 ④한-말련: 스마트 시티 등

라 디지털 통상 기반 강화 및 국내제도 선진화

1. 디지털 통상 정책개발 인프라 확충

○ 디지털 통상정책의 대상·범위를 명확히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한 **통계 확보, 경제적 영향분석 모델 개발** 및 관련 **연구조직 확보**

2. 디지털 통상 민·관 공동대응체계 구축

○ 디지털 통상이슈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'디지털 통상 포럼' 등 **민·관 협력채널 구축**

○ **분석 보고서** (해외 디지털 장벽, 우리기업 경쟁력 수준 등) **발간, 국제 컨퍼런스 개최 등** 대외 소통 확대

3. 국내제도 선진화(중장기 과제, 관계부처 협업)

○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국내시장에서 **외국기업과 역차별 해소**, 통상 협상 및 국제협력사업을 활용한 **국내규제 완화** 등 추진